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2. 1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2월 2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2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행정계장 정 석 한)

가. 제안이유

사하구 행정운영동중 하단 제2동, 신평 제2동의 동사 신축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
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하단 제2동, 신평 제2동의 위치를 각각 하단동 1161-3, 신평동 647-1로 함.

3. 검토의견

하단 제2동, 신평 제2동의 동사 신축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로서 정하는
것이 옳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습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)